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 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간위탁사무 수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탁기관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시 내용을 공개토록 하며, 민간수탁기관이 다른 민간기관에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명시하고, 민간수탁기관이 민간수탁기관 의무 등 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의 권한 중 활동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교육부장관 소관 사무 중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검정사무 중 기술결함 및 기술·서비스의 적합성 여부 심사에 대한 사무의 수탁기관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하고, 환경부장관 소관 사무 중 「국토기본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의견 제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개별법령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계약 체결 결과의 공개(안 제13조제3항 신설)

위탁기관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나. 법적 근거 없는 재위탁 금지(안 제13조의2 신설)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를 두어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다. 위탁계약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안 제14조)

민간수탁기관이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라. 재외동포청장 권한의 위임(안 제22조의3 신설)

재외동포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중에서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한정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권한의 중복 위임근거 삭제(안 제3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협의 등 권한은 「농지법 시행령」(’25.1.3. 시행)에 해당 위임근거를 규정할 예정으로 중복 위임근거 삭제

바. 환경부장관 권한의 위임 등(안 제38조)

1) 환경부장관 소관 사무 중 「국토기본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의견 제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함

2) 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37조의2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승인 등 권한을 국립생태원장에게 민간위탁 중이므로, 제38조제3항에 중복으로 규정된 위임근거 삭제

사. 교육부장관 소관 사무의 수탁기관 변경(안 제45조)

종전에는 디지털교과서의 검정에 관한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하였으나, 디지털교과서의 기초심사 중 기술 결합 등 조사에 관한 사항과 본심사 중 기술·서비스의 정합성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재외동포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12.31. ~ 12.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위임기관의 장”을 “위임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탁기관의 장”을 “위탁기관”으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재위탁) ① 민간수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수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재위탁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제13조에 따른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의 해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탁기관의 장”을 각각 “위탁기관”으로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재외동포청 소관) 재외동포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재외동포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0. 「국토기본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군기본계획만 해당한다)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의

전 제출

제45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라 교과용도서 중 디지털교과서 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한다. 다만, 제3항, 제4항의 기관은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검정 사무를 수행할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초심사 중 기술 결합 등 조사에 관한 사항
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른 본심사 중 기술·서비스의 적합성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사무 등의 공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소관 민간 위탁사무가 있는 위탁기관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재위탁에 관한 특례) 제13조의2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민간위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고 있는 민간수탁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재위탁하고 있는 사무를 계

속 재위탁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u>위임기관의 장</u> 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 · 면 · 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재위임) ----- ----- ----- ----- ----- ----- ----- ----- ----- 위임기관 ----- ----- ----- ----- ----- ----- -----.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u>위탁기관의 장</u> 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생 략)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 ----- ----- 위탁기관 ----- ----- ----- -----.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 ②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14조(지휘·감독) ① ~ ③ (생 략)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

(현행과 같음)

③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재위탁) ① 민간수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수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재위탁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
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
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
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에 따른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의 해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를 취
소 또는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
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
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
어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
탁기관-----

-----.

② 위탁기관-----

-----.

제22조의3(재외동포청 소관) 재외
동포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재외동포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1. ~ 3. (생략)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안의 협의. 다만, 협의대상 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한정한다.

가. 농업진흥지역 안: 1만제곱
미터 미만인 경우

나. 농업진흥지역 밖: 20만제
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
른 계획관리지역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다
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에는 면
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
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요
청된 것은 제외한다)에 편
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
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해
당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
첨단산업단지 면적의 100
분의 50 미만인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유통형만 해당하
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
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
인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
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협의. 다만, 같은 법 제30조제
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
는 경우로서 그 농지의 증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
는 경우만 해당한다.

6. ~ 8. (생략)

② ~ ⑫ (생략)

제38조(환경부 소관) ① 환경부장
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게 각각 위임한다.

1. 삭제

2. ~ 9. (생략)

<신설>

<삭제>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38조(환경부 소관) ① -----

-----.

2. ~ 9. (현행과 같음)

10. 「국토기본법」 제19조의3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수입 승인 등
2.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수입 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3.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4.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생산 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 그 통보

제3항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군기본계획만 해당한다)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의견 제출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5. 법 제13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에 관한 협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알림 및 의견수렴
6.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의 금지 또는 제한 및 그 내용의 통보
7.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8.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9.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10.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11.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자료·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12.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

<u>13.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u> ④·⑤ (생략) 제45조(교육부 소관) ① ~ ⑩ (생략) <u><신 설></u>	④·⑤ (현행과 같음) 제45조(교육부 소관) ① ~ ⑩ (현행과 같음) <u>⑪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라 교과용도서 중 디지털교과서 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한다. 다만, 제3항, 제4항의 기관은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검정 사무를 수행할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u> <u>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초심사 중 기술 결함 등 조사에 관한 사항</u> <u>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른 본심사 중 기술·서비스의 적합성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4